



## 1. 중국정부의 “기업명칭 등록관리규정”

[제7조] 사업자명은 반드시 상표(상호), 업종 또는 경영 특성, 조직 형태의 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업자명 앞에는 반드시 소속된 지명(자치구·직할시·주·구 등)을 표기해야 한다.

[제9조] 사업자명은 이하 열거된 항목의 단어(문자·문구)가 포함되어선 안된다. (1)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사회공익을 저해 단어, (2) 사기성(과장)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어, (3) 해외 국가명(지명)의 명칭·국제기구 명칭을 담은 단어, (4) 정당·군기관 명칭, 연합회 및 사회단체 기구·군 부대 번호를 담은 단어, (5) 한어병음자모(외래어 명칭에 사용된 것은 제외), 숫자를 담은 단어, (6)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 상 금지어로 규정된 것

[제10조] 사업자등록 시 이하 제시된 단어(문자·문구)의 상호를 선택할 수 있다. 상호는 반드시 2개 글자 이상으로 구성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한 해, 현지 또는 타지역명을 사용한 상호등록이 가능하다. 단 이는 반드시 현(懸) 급 이상의 행정구역에 한한다. 민영기업의 경우 투자자의 이름을 사용한 사업자명 등록이 가능하다.

모든 기업은 사업자명칭 앞서 베이징 등 소재지 명칭을 표시해야 함. 기업명칭(상호)은 지역명 다음에 기재하는데, 2글자 이상이어야 함. 그 다음 업종이나 경영특성을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조직형태를 기재함.

## 2. 중국정부의 기업정보 등록 관리 - 우리나라 상업등기부 대응

1

회사의 실제 확인



● 중국기업은 모두 중국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

0 영문은 확인이 힘들, 반드시 중문, 서류위조 대응책은?  
 <답> 홈페이지 -> 대표번호 -> 해당 업무 담당 통화(핸드폰 X)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首页 | 要闻动态 | 监管执法 | 服务发展 | 组织机构 | 政务公开 | 政策法规 | 业务办理 | 公众服务 | 公众互动 | 工作研究

总局要闻 | 图片报道 | 招商工作 | 地方动态 | 主要职责 | 领导活动 | 国际合作 | 重要发布 | 公告公示 | 行政审批 | 统计资料 | 专题报道 | 政府信息公开

服务导航 | 办事指南 | 办事指南 | 表格下载 | 网上登记 | 企业公示 | 商标申请 | 商标查询 | 电话直播 | 公众留言 | 在线访谈 | 网站导航 | 12315 | 地方监管链接

商事制度改革

国务院 | 工商要闻 | 地方动态 | 媒体聚焦

- 辽宁去年受理消费者投诉23.4万件 >>> 171
- 浙江发布消费环境白皮书 网络购物投诉占比高 >>> 171
- 广西着力打造“放心消费”新模式 >>> 160
- 湖北推出首份消费维权地图 >>> 144
- 四川推进“放心舒心消费城市”创建 >>> 124
- 北京首家商标法司法鉴定窗口在朝阳区挂牌 >>> 144
- 新疆“五个突出”推进机关党的建设 >>> 120

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

WWW.QSXT.GOV.CN

全国12315  
互联网平台

WWW.12315.CN

## 3.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 [www.qichacha.com](http://www.qichacha.com) -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

让商业更透明  
大数据



[출처: 치차차]

중문 슬로건 - “빅데이터가 비즈니스를 더 투명하게 만든다.”

#### 4. 대한무역협회 발표자료

**4 무역업체 신용위험 관리 10대 원칙** KIT

**● 소액이라도 철저한 사전 체크로 위험 최소화 필요**

- ① 첫 거래이면서 대규모 수출이라면 신용장 거래를 고수하라
- ② 거래전에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라
- ③ 비신용장 방식은 수출보험에 가입한 후에 진행하라
- ④ 선불지급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최소화하라(수입)
- ⑤ 서류만 믿지 말고 현장(공장)을 확인하라(수입)
- ⑥ 인터넷을 통한 저가공세는 의심하고 접근하라(수입)  
- 수천만원대 거래 + 핸드폰 번호만 있는 명함
- ⑦ 입금구좌 변경은 전화나 정식 서류로 확인하라(수입)
- ⑧ 첫 번째 거래는 물론 금액이 늘어난 2~3번째 거래에도 유의하라
- ⑨ 수입시 중국에서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라  
(선적전 검사 무용론)
- ⑩ 개인 휴대전화와 메일이 아닌 회사 대표전화를 통해 마케팅 담당자 실존여부를 확인하라

중국법무, 국제계약, 계약분쟁, 지재권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